

제17장

예외

제 17.1 조

일반적 예외

- 제 2 장(상품 무역), 제 3 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4 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 5 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6 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제 7 장(무역 구제)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 20 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 제 8 장(서비스 무역), 부속서 8-나(통신) 및 제 9 장(디지털 무역)¹의 목적상, GATS 제 14 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17.2조

안보 예외

-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핵분열성 및 핵융합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¹ 제 17.1 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 2) 무기, 탄약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군사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조치
 - 3) 통신, 전력 및 수도 시설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공 사회기반시설²을 불능화하거나 기능을 저하하려는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 4) 국내적 비상시,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또는
-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공동위원회는 제1항나호 및 제1항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그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17.3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공공 또는 민간 소유에 관계없이 중요한 공공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2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제2항을 조건으로

가. 제8.3조(내국민 대우)는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이 호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특정 서비스의 구입 또는 소비에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제8.3조(내국민 대우) 및 제8.4조(최혜국 대우)는 소득, 자본이득 또는 기업의 과세가능한 자본에 대한 과세조치나 상속, 유산취득, 증여 그리고 세대를 건너뛴 이전에 대한 세금 외의 모든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다만, 가호 및 나호에 언급된 조들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 조세협약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이익에 대한 최혜국 대우 의무

라.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

마.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개선

바. 기존 과세조치의 비합치 규정의 개정이 위의 어떠한 조들에 대해서도 그 개정 시점에서 그 규정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사. (GATS 제14조라호에서 허용된 대로)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과세조치의 채택 또는 집행, 또는

아.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대한 납입이나 그 소득과 관련된 이득의 수령

또는 지속적인 수령에 대하여 당사국이 그 연금신탁 또는 연금계획에 관하여 지속적인 관할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규정

5. 이 조의 목적상

- 가. 조세협약이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소득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 협정 또는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이나 약정을 말한다.
- 나. 세금과 과세조치는 제1.5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관세와 그 정의 중 예외 나호부터 마호까지에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 다.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 그리고
- 2) 조지아의 경우, 재무부 공법인인 국세청

제17.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7.5조 비밀유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